

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

□ 특별공급 신청일정

구 분	일 자	시 간	장 소
신청일시	7월 4일(화)	10:00~15:00	당사 견본주택
당첨자 선정	7월 5일(수)	14:00	당사 견본주택 개채
동·호수 발표	7월 13일(목)	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	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2you.com)

※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 될 수 있음

□ 특별공급 자격요건

-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8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17.06.29)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(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)으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
 - 가. "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"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.(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)
 - 나. "종사자"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.
 - 다. "약국"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.
 - 라. "의료기관"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.
 - 마. "교육기관"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,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,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. 위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(외국인은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)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(2017.06.29)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원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.
-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. 단, 외국인에게 우선 공급함(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8조)

[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 유의사항]

-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12조 입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조치"에 의거 계약자는 전매제한 기간까지 특별공급대 상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,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다.
 - 가. 전매제한 기간 내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
 - 나.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,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
-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.
-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사업주체는 신청자현황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장은 대상자 적합여부를 확인 후 3일 이내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발급하여야 한다.
-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람.
- 특별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주체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함.

-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(국가유공자 등 제외)
 - 주택청약종합저축 :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
 - 청약예금 :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
 - 청약부금 :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㎡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거나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된 자

□ 특별공급 구비서류

구 분	공통서류	발급기준	구비서류
경제 자유구역 특별공급	사업등록증, 재직증명서,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(은행발급), 근로소득원천징수납부 증명서(1년 이상), 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외국인	외국인 등록증(사실증명서),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(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, 여권 및 비자(외국인), 인감도장(인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		내국인	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동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,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

※ 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[인천경제 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]

구 분	구비서류
해당자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[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]
대리인 신청시	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
	신청인 인감증명서(주택공급신청 위임용)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

- ※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- ※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, 더 정확한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.